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19일, 김성기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0월 13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성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이효석문화예술촌 군민 무료 전환으로 군민 누구나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여 군민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창군민 대상 관람료 면제
 - (기존) 관람료 50% 감면 → (변경) 관람료 면제
- 감면 근거 확대
 - 다른 지자체와의 협약이나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시 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김성기 의원
- 제안일자 : 2025. 9. 19.
- 회부일자 : 2025. 10. 13.
- 상정일자 : 2025. 10. 13.

2. 제안이유

- 이효석문화예술촌 군민 무료 전환으로 군민 누구나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여 군민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평창군민 대상 관람료 면제
 - (기존) 관람료 50% 감면 → (변경) 관람료 면제
- 감면 근거 확대

- 다른 지자체와의 협약이나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시 감면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이효석문화예술촌의 관람료 체계를 개선하여 평창군민 누구나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6조제4항에서 평창군민의 관람료 50% 감경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6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함.
- 별표 4에서 평창군민의 관람료를 면제로 변경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이효석문화예술촌의 평창군민 관람료를 기존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전환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및 문화예술 진흥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누구나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군민의 관람료 면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고 특정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이효석문화예술촌의 2024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군민 관람료 수입은 전체 수입 1억4천여만 원 중 약1.3%인 180여만 원(일반권 1,265천원, 통합권 550천원)에 불과하여, 면제 전환에 따른 세입 감소는 재정적 부담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전액 면제 시행 시 군민 만족도와 이용률 제고를 통해 문

화 복지 혜택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가 상승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시설 내 카페 소비 확대 유도, 나아가 외부 관광객에게 군이 주민 친화적 도시라는 긍정적 이미지 부각 등 파급 효과가 기대됨.

※ 참고자료(2024년 관람권 판매 결산)

연도	수량	판매액(원)	비고
총계	78,068	142,091,500	
소계	31,597	67,172,500	
일반	27,284	60,788,000	
단체	3,301	5,119,500	
군민	1,012	1,265,000	
소계	16,751	71,575,000	
통합권	일반	14,398	64,791,000
	단체	2,078	6,234,000
	군민	275	550,000
소계	27,802	0	
무료	기타	9,834	0
	노인	17,040	0
	장애인	928	0
소계	1,918	3,344,000	
주민증	일반	614	736,000
	통합	1,304	2,608,000

불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로 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가. ~ 다. (생 략)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마. ~ 차. (생 략)

6.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기 의원)

의안 번호	476
----------	-----

발의연월일: 2025년 9월 19일

발의자: 김성기 의원

찬성자: 남진삼, 박춘희, 이창열 의원

1. 제안이유

- 이효석문화예술촌 군민 무료 전환으로 군민 누구나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여 군민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군민 대상 관람료 면제

- (현행) 관람료 50% 감면 → (개정) 관람료 면제

나. 감면 근거 확대

- 다른 지자체와의 협약이나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시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불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2025. 8. 26. ~ 2025. 9. 3.(9일간), 의견없음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평창군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문화시설 관람료(제6조제1항 관련)

1. 이효석문학관

(단위: 원)

구 분	일 반	단 체	비 고
관람료	2,000	1,500	

2. 효석달빛언덕

(단위: 원)

구 분	일 반	단 체	비 고
관람료	3,000	2,000	

3. 통합권(이효석문학관, 효석달빛언덕)

(단위: 원)

구 분	일 반	단 체	비 고
관람료	4,500	3,000	

※ 단체: 20명 이상 동시 입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 ① ~ ③ (생 략)	제6조(관람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p>④ 군수는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군민은 100분의 50을 감경한다.</p> <p>⑤ (생 략)</p> <p><신 설></p>	<p>④ -----</p> <p>-----</p> <p>-----. <단서 삭제></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별표 3] <u>문화시설 관람료(제6조제1항 관련)</u></p> <p>1. 이효석문학관</p> <p>(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th>일 반</th><th>단 체</th><th>군 민</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관람료</td><td>2,000</td><td>1,500</td><td>1,000</td><td></td></tr> </tbody> </table> <p>2. 효석달빛언덕</p> <p>(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th>일 반</th><th>단 체</th><th>군 민</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관람료</td><td>3,000</td><td>2,000</td><td>1,500</td><td></td></tr> </tbody> </table> <p>3. 통합원(이효석문학관, 효석달빛언덕)</p> <p>(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th>일 반</th><th>단 체</th><th>군 민</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관람료</td><td>4,500</td><td>3,000</td><td>2,000</td><td></td></tr> </tbody> </table> <p>* 단체: 20명 이상 동시 입장</p>	구 분	일 반	단 체	군 민	비 고	관람료	2,000	1,500	1,000		구 분	일 반	단 체	군 민	비 고	관람료	3,000	2,000	1,500		구 분	일 반	단 체	군 민	비 고	관람료	4,500	3,000	2,000		<p>[별표 3] <u>문화시설 관람료(제6조제1항 관련)</u></p> <p>1. 이효석문학관</p> <p>(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th>일 반</th><th>단 체</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관람료</td><td>2,000</td><td>1,500</td><td></td></tr> </tbody> </table> <p>2. 효석달빛언덕</p> <p>(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th>일 반</th><th>단 체</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관람료</td><td>3,000</td><td>2,000</td><td></td></tr> </tbody> </table> <p>3. 통합원(이효석문학관, 효석달빛언덕)</p> <p>(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th>일 반</th><th>단 체</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관람료</td><td>4,500</td><td>3,000</td><td></td></tr> </tbody> </table> <p>* 단체: 20명 이상 동시 입장</p>	구 분	일 반	단 체	비 고	관람료	2,000	1,500		구 분	일 반	단 체	비 고	관람료	3,000	2,000		구 분	일 반	단 체	비 고	관람료	4,500	3,000	
구 분	일 반	단 체	군 민	비 고																																																			
관람료	2,000	1,500	1,000																																																				
구 분	일 반	단 체	군 민	비 고																																																			
관람료	3,000	2,000	1,500																																																				
구 분	일 반	단 체	군 민	비 고																																																			
관람료	4,500	3,000	2,000																																																				
구 분	일 반	단 체	비 고																																																				
관람료	2,000	1,500																																																					
구 분	일 반	단 체	비 고																																																				
관람료	3,000	2,000																																																					
구 분	일 반	단 체	비 고																																																				
관람료	4,500	3,000																																																					

[별표 4]

관람료 면제대상(제6조제4항 관련)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6세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4. 다음 각 목의 법률조항에 따른 해당자와 그 유족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만, 유족은 해당하지 않는다.
 -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5. 단체(20명 이상으로 한다) 관람에서 20명마다 1명의 인솔자
- 6.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4]

관람료 면제대상(제6조제4항 관련)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6세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4. 다음 각 목의 법률조항에 따른 해당자와 그 유족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만, 유족은 해당하지 않는다.
 -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5. 단체(20명 이상으로 한다) 관람에서 20명마다 1명의 인솔자
- 6.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평창군민**
- 7.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 7. (생략)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을 이용하는 연평균 입장객 중 평창군민은 약 1,000명이며, 이에 따른 연간 입장권 매출액은 약 100만 원입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은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연락처	(033) 330 - 2850